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 및 계약기간

-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 나. 장기요양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 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라.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1) 계약 당사자
 - 2) 계약 기간
 -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연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4)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5)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6)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를 할 수 있는 권리
-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4.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6)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6 %	9 %	15 %			6 %	9 %	15 %
30분	16,940	1,017	1,525	2,541	150분	49,160	2,950	4,424	7,374
60분	24,580	1,475	2,212	3,687	180분	55,350	3,321	4,982	8,303
90분	33,120	1,987	2,981	4,968	210분	61,670	3,700	5,550	9,251
120분	42,160	2,530	3,794	6,324	240분	68,030	4,082	6,123	10,205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6 %	9 %	15 %
차량이용 (차량내)	86,480	5,189	7,783	12,972
차량이용 (가정내)	77,970	4,678	7,017	11,696
차량미이용	48,690	2,921	4,382	7,304

☞ 가족요양 급여비용

구분	가능일	가능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6 %	9 %	15 %
가족요양 60분	20	20	491,600	29,496	44,244	73,740
가족요양 90분	30	45	993,600	59,616	89,424	149,04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1등급(4시간)	2등급(4시간)	3등급(3시간)	4등급(3시간)	5등급(3시간)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가능일수		33	30	26	24	21
본인 부담금	6 %	138,384	125,004	89,142	82,236	70,620
	9 %	207,576	187,506	133,713	123,354	105,930
	15 %	345,960	312,510	222,855	205,590	176,550



세종통합돌봄센터

044-862-2248